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. 4. 24 선고 2017가단170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메이슨에프앤아이 대부 주식회사

피 고 1. 강구농업협동조합

2. A

3. B

4. C

5. D

6. E

변론 종결 2018. 4. 17

판결 선고 2018. 4. 24

## 주 문

1. 주식회사 F에게,

가. 피고 강구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등기계 1994. 6. 24. 접수 제7011호로 마친,

나.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9분의 3지분, 피고 B, C, D는각 9분의 2지분에

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4. 12. 6. 접수제14433호로 마친,  
다. 피고 E는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4. 12. 21.  
접수 제20599호로 마친  
각 근저 당권설정 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  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F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대구은행(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그 명칭이 처음 언급될 때 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)은 1997. 8. 22.와 1997. 9. 30. 주식회사 F에게 대출을 하여주었다.

G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2) 대구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을 양도하였고,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.

3)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과 G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위 법원은 2016 . 4. 20. 'F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 다만 G은 169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, 3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1999 . 10. 1.부터 2005 . 5. 18.까지는 연 18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판결(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7741호 판결. 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 이 사건 판결은 2016. 5.11. 확정되었다.

## 나. 이 사건 각 등기

- 1) F은 1994. 6. 24. 피고 강구농업협동조합(이하 '피고 조합'이라 한다)에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1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7011호로 채무자 정병우,채권최고액 1,400만 원,근저당권자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제1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- 2) F은 1994. 12. 6. H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2부동산'이라 한다)같은 등기계 접수 제14433호로 채무자 F, 채권최고액 3,000만 원,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제2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- 3) F은 1994. 12. 21.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3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20599호로 채무자 F,채권최고액 4,000만 원, 근저당권자 피고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제3등기'라 하고,위 각 등기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등기'라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## 다. H의 사망과 상속

H은 2002. 10. 30. 사망하였고, H의 처(妻) 피고 A와 자녀 피고 B, C, D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녀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.

## 라. F의 청산종결

F은 2005. 12. 6. 해산간주되었고,2008. 12. 5. 청산종결되었다.

## [인정근거]

○ 피고 조합에 대하여: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제1항(자백간주)

○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: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이는 채권자대위권행사를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F의 무자력

F은 이미 청산종결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이라 할 것이다.

다. F의 이 사건 각 등기 말소등기청구권

1) 이 사건 제1등기는 1994. 6. 24., 이 사건 제2등기는 1994. 12. 6., 이 사건 제3등기는 1994. 12. 21. 각 이루어졌다. 이 사건 각 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없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등기일 무렵에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각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F이 매년 이 사건 제3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바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표식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,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등기의,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 A는 9분의 3, 피고 B, C, D는 각 9분의 2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등기의, 피고 E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3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진영현

별지